

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23호 관련)

1. 제1종보호시설

- 가.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·놀이방·어린이놀이터·학원·병원(의원을 포함한다)·도서관·청소년수련시설·경로당·시장·공중목욕탕·호텔·여관·극장·교회 및 공회당(公會堂)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- 다. 예식장·장례식장 및 전시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
- 라.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
- 마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보호시설

- 가. 주택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